

사도 변경 결정 고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58-38번지 일대 사도에 대하여 「사도법」 제4조에 의거 변경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사도변경 사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 규정에 따라 정정한 등록사항 및 서대문구 도정415-998(1979.09.29.)호에 따라 지적선에 맞춰 사도를 변경코자 함.

2. 사도변경 결정 조서

구 분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고
당 초	4~6	25	홍제동 158-39	홍제동 158-38	홍제동 158-38번지 대지 내 사도 일부 정정
변 경	4	15	홍제동 158-39	홍제동 158-39	

3. 관계도면 : 생략

4. 열람장소 : 서대문구 도시관리과(☎ 330-164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